

昭和 94 10.17
昭和 97. 6.26
412007

全州 三川(2)地區 宅地開發事業
詳 細 計 劃

1 9 9 7.

全 州 市
公 營 開 發 事 業 所

위 치 도

전주시청

도청

김제

김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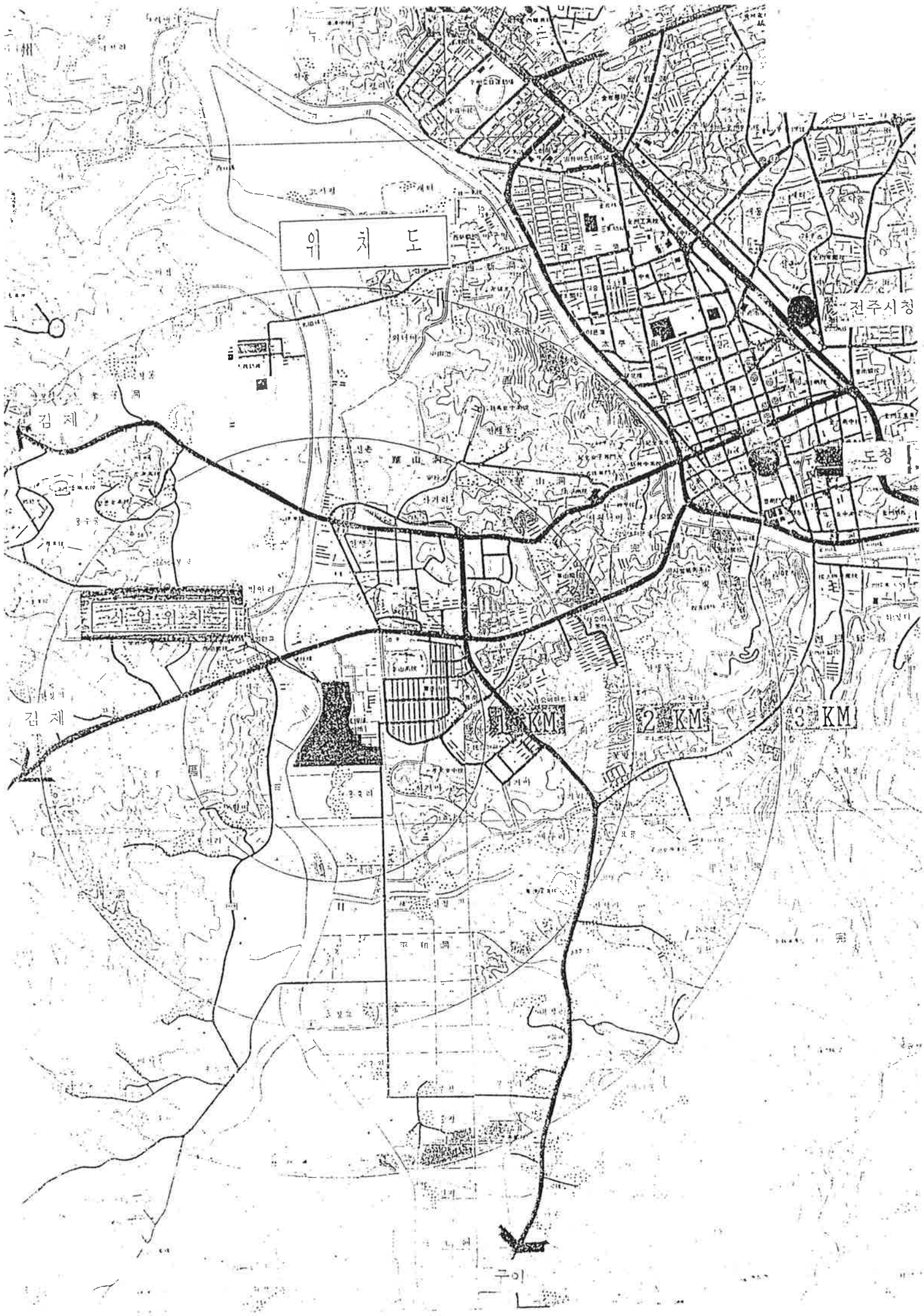
비인리

1 KM

2 KM

3 KM

구이



단독주택용지 주요계획

1. 차량출입 불허구간 (도면참조)

2. 건폐율, 용적율, 높이계획

건 폐 율	용 적 율	높 이 계 획
60 % 이하	400 % 이하	4층 이하

3. 지 정 용 도

- 단독주택
- 다가구 주택
- 근린생활시설 겸용 단독주택 (40%이내 근린생활시설 이용)

4.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따른 용도제한(학교보건법 제6조)

- 대상지역 : 도면표기 A
- 대 상 : 근린생활시설 겸용 단독 주택지로서 학교 출입문에서 200m
반경내의 근린생활시설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)중 학교
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저촉되는 다음시설
- 불허용도
 - 전문음식점, 각종유흥음식점, 간이주점
 - 공동복용장중 휴게시설
 - 안마시설소
 - 사행 행위장, 당구장
 - 전자유기장, 만화가게
 - 기타 위와 유사한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시설

공동주택용지 주요계획

1. 차량출입 허용구간의 차량 진입 불가 (도면참조)

2. 건폐율, 용적율, 높이계획

건 폐 율	용 적 율	높 이 계 획
25 % 이하	250 % 이하 (단, 부대·복리시설은 제외)	18층 이하

3. 건축선 이격

- 도로변, 완충녹지변에서 일정거리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(도면참조)

4. 주택건설 계획

구 분		수용호수(호)	층 수	비 고
계				
2 블럭	60㎡ 이하	498	18~8	
	60㎡ ~ 85㎡ 이하	-		
3 블럭	60㎡ 이하	360	15	
	60㎡ ~ 85㎡ 이하	180	15	
6 블럭	60㎡ 이하	540	18~15	
	60㎡ ~ 85㎡ 이하	360	18~15	

4. 공동주택지 배치계획 (도면참조)

근린생활시설 주요계획

1. 차량출입 허용구간의 차량 진입 불가 (도면참조)

대 상 : 10블럭, 13블럭

2. 건폐율, 용적율, 높이계획

건 폐 율	용 적 율	높 이 계 획
60 % 이하	400 % 이하	5층 이하

3.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따른 용도제한(학교보건법 제6조)

- 대상지역 : 도면표기 D

- 대 상 : 근린생활시설 겸용 단독 주택지로서 학교 출입문에서 200m

반경내의 근린생활시설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)중 학교

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저촉되는 다음시설

- 불허용도

- 전문음식점, 각종유흥음식점, 간이주점
- 공중복용장중 휴게시설
- 안마시술소
- 사행 행위장, 당구장
- 전자유기장, 만화가게
- 기타 위와 유사한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시설

공공시설용지 주요계획 (초등학교, 소방서)

1. 차량출입 불허구간 (도면참조)

2. 건폐율, 용적율, 높이계획

건 폐 율	용 적 율	높 이 계 획
60 % 이하	400 % 이하	5층 이하

目 次

① 課 業 概 要

1. 택 지 개 발 사 업 목 적
2. 상 세 계 획 수 립 목 적
3. 위 치 및 면 적
4. 사 업 가 간
5. 인 구 및 주 택 건 설 계 획

② 詳 細 計 劃 概 要

1. 상 세 계 획 구 역 지 정
2. 토 지 이 용 계 획
3. 도시계획 시설의 배치와 규모

③ 街區 및 劃地 計劃

④ 建築物·用途 및 建蔽率·容積率·높이計劃

1. 건 축 물 의 용 도 계 · 획
2. 건축물의 건폐율·용적율·높이계획

⑤ 其他 事項에 關한 計劃

1. 도시경관 조성계획
2. 교 통 처 리 계 획
3. 기 타

全州 三川(2)地區 宅地開發事業 詳細計劃

1 課 業 概 要

1. 택지개발사업 목적

- 국민생활 기본요소인 주택건설 확대를 위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주택의 개발 공급으로 전주시의 주택난 해소
- 생활편익시설의 적정 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

2. 상세계획 수립목적

전주 삼천(2)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가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상 상세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상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바,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.

3. 위치 및 면적

- 위 치 : 전주시 완산구 삼천, 효자동 일원,
- 면 적 : 158,805.8m²(48천평)

4. 사업기간

- 개발계획 승인 : 1994. 4. ~ 1997. 6. 30.

5. 인구 및 주택건설 계획

구 분	면적m ² (평)	세대수 (호)	인구수 (인)	인구밀도 (인/ha)	평 형 (전용/분양)	층수 (층)	용적율 (%)
계	79,693.0 (24,107.0)	2,000	7,399	928			
단독주택	13,543.9 (4,097.0)	62	229	169			
공동주택	66,149.1 (20,010.0)	1,938	7,170	1,084			
60m ² 이하 주택용지	47,265.1 (14,297.6)	1,398	5,172	1,094	14~18/ 20~24	8~18	↓ 250.0
60m ² ~85m ² 주택용지	18,884.0 (5,712.4)	540	1,998	1,058	18~25/ 23~32	15~18	↓ 250.0

2 詳細計劃概要

1. 상세계획구역 지정

가. 상세계획 구역

구역명	위치	면적(m²) (평)	비고
전주 삼천(2)지구 택지개발사업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, 효자동 일원	158,805.8 (48,038.5)	

나. 상세계획구역 지정 신청 사유

- 택지개발사업. 구역내 토지 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의 기능,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('97. 1. 29)부칙3항에 의거 상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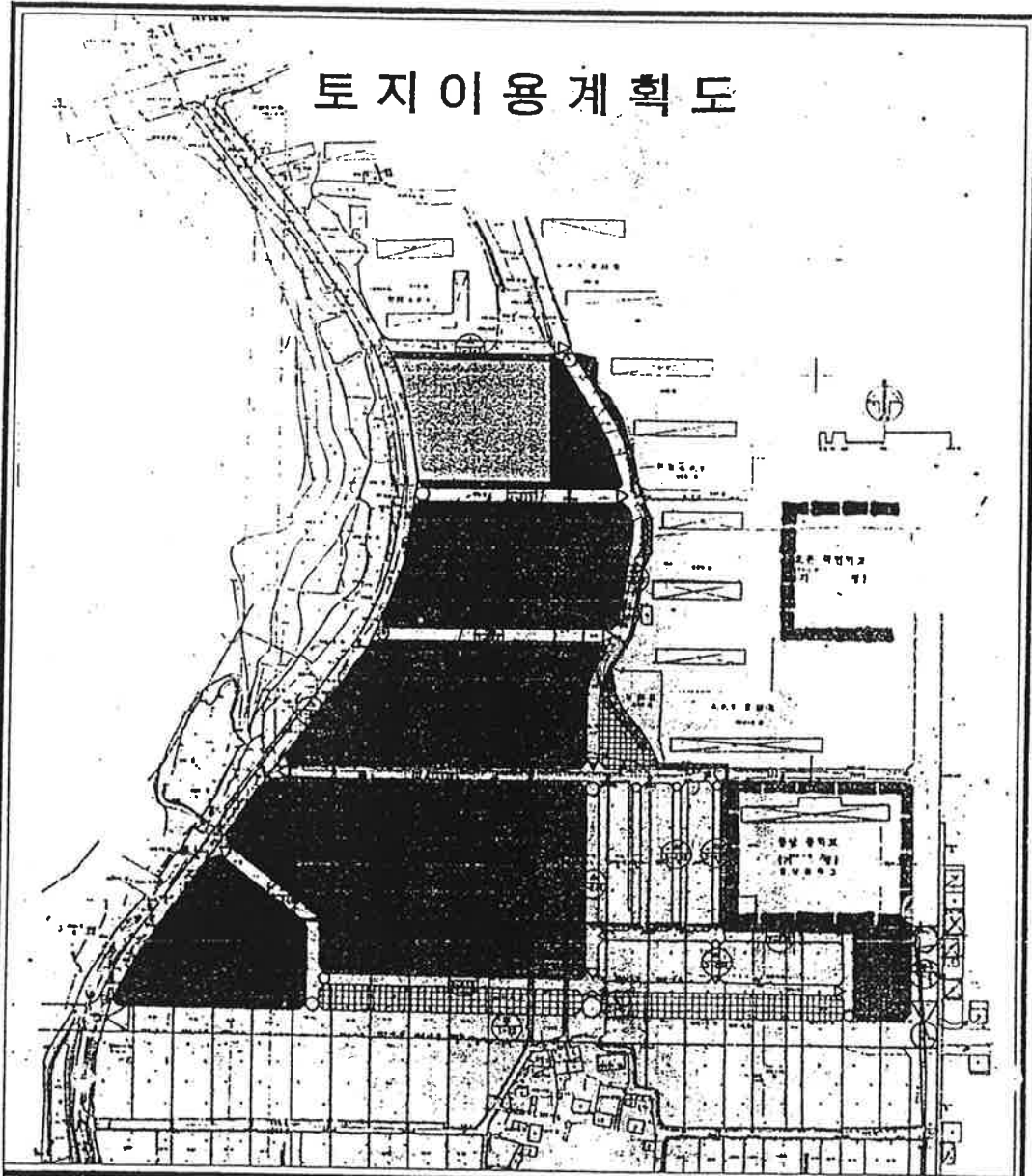
2. 토지이용계획

본 계획에서는 택지개발계획상의 용도별 토지이용계획과 상세계획에서의 용도지역 및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

☒ 택지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

구분	면적		구성비 (%)	증·감	비고
	(m²)	평			
계	158,805.8	48,038.5	100.0	감712.2	
주 택 소 계	79,693.0	24,107.0	50.1	증 76.0	
건 설 단 독	13,543.9	4,097.0	8.5	감 66.1	
용 지 공 동	66,149.1	20,010.0	41.6	증142.1	
근린생활시설용지	9,233.5	2,793.1	5.8	증 24.5	
소 계	69,879.3	21,138.4	44.1	감812.7	
도 로	35,375.4	10,701.0	22.2	감619.6	
공 공 광 원	13,070.4	3,953.8	8.3	감468.6	
공 공 녹 지	5,965.3	1,804.5	3.8	증 16.3	
학 교	10,026.8	3,033.1	6.3	증290.8	
소 방 서	3,103.8	938.1	2.0	감 21.2	
주 차 장	991.7	300.0	0.6	감 10.3	
종교시설	1,345.9	407.1	0.9	감 0.1	

토지이용계획도



	단독주택		어린이공원		주차장
	공동주택		국민학교		녹지
	근린생활시설		소방서		도로
	근린공원		종교시설		

☒ 상세계획상 토지이용계획

○ 용도지역 계획

구 분	면 적(m ²)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	
계	159,518.0	158,805.8	100.00	
주거지역 (일반)	159,518.0	158,805.8	100.00	
상 업 지 역	-	-	-	
공 업 지 역	-	-	-	
녹 지 지 역	-	-	-	

3.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

① 도 로

구 분	종 류	폭원(m)	노선수	연장(m)	면 적(m ²)	비 고
일 반 도 로	계	-	15	3,085	35,375.4	
	소계		3	753	14,408.7	
	중로					
	1	20	2	733	14,108.7	
	2	15	1	20	300.0	
	소계	-	12	2,332	20,966.7	
	소로					
	1	10	6	1,323	13,230.0	
	2	8	2	660	5,280.0	
	3	6	4	349	2,094.0	
가 각 부 분 면 적					362.7	

☒ 상세계획상 토지이용계획

○ 용도지역 계획

구 분	면 적(m ²)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	
계	159,518.0	158,805.8	100.00	
주거지역 (일반)	159,518.0	158,805.8	100.00	
상 업 지 역	-	-	-	
공 업 지 역	-	-	-	
녹 지 지 역	-	-	-	

3.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

① 도 로

구 분	종 류	폭원(m)	노선수	연장(m)	면 적(m ²)	비 고
일 반 도 로	계	-	15	3,085	35,375.4	
	소계		3	753	14,408.7	
	중로	1	20	2	733	14,108.7
		2	15	1	20	300.0
	소계		12	2,332	20,966.7	
	소로	1	10	6	1,323	13,230.0
		2	8	2	660	5,280.0
		3	6	4	349	2,094.0
	가 각 부 분 면 적	-	-	-	362.7	

• 도로결정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사용 형태	기능	연 장(m)			기 점	종 점	비 고
							계	지구내	지구외			
기정	중로	1	2	20	일반 도로	보 조 간선도로	1,560	94	1,466	대로 1-3	대로 1-12	
신설	"	"	22	"	"	"	1,950	639	1,311	광로 1	대로 3-14	
소 계							1,950	639	1,311			
신설	중로	2	67	15	일반 도로	보 조 간선도로	20	20	-	중로 1-22	소로 2-616	
소 계							20	20				
신설	소로	1	243	10	일반 도로	집 산 도 로	159	159	-	소로 1-249	소로 1-247	
"	"	"	244	"	"	"	183	183	-	소로 1-249	소로 1-247	
"	"	"	245	"	"	"	350	350	-	소로 3-493	소로 1-249	
"	"	"	246	"	"	"	160	160	-	중로 1-22	소로 1-249	
"	"	"	247	"	"	"	333	333	-	소로 1-143	소로 1-245	
"	"	"	248	"	"	"	145	145	-	소로 1-245	소로 2-616	
소 계							1,323	1,323				
신설	소로	3	615	8	일반 도로	집 산 도 로	256	256	-	중로 1-22	소로 1-248	
"	"	"	646	"	"	"	404	404	-	소로 1-246	소로 2-615	
소 계							660	660				
신설	소로	3	491	6	일반 도로	집 산 도 로	107	107	-	소로 1-249	소로 1-247	
"	"	"	492	"	"	"	105	105	-	소로 1-245	소로 2-615	
"	"	"	493	"	"	"	106	106	-	소로 1-245	소로 2-615	
"	"	"	494	"	"	"	31	31	-	소로 2-615	소로 2-616	
소 계							349	349				

② 주 차 장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²)	비 고
주 차 장	주 차 장	삼천동1가 723- 4	991.7	

③ 광 장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²)	비 고
광 장	광 장	“해 당 없 음”		

④ 녹 지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²)	비 고
녹 지	완 충 녹 지	효자동1가 659- 2	626.8	
”	”	효자동1가 659- 3	495.9	
”	”	효자동1가 660- 2	432.0	
”	”	삼천동1가 722- 1	432.5	
”	”	삼천동1가 722- 3	570.0	
”	”	삼천동1가 723- 1	600.3	
”	”	삼천동1가 723- 3	340.0	
”	”	효자동1가 661	664.1	
”	”	효자동1가 662-1,2	462.4	
”	”	효자동1가 662- 4	235.1	
”	”	효자동1가 666	1,106.2	

⑤ 공공공지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²)	비 고
공공공지	공공공지	“해 당 없 음”	-	

⑥ 공 원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²)	비 고
공 원	근 린 공 원	삼천동1가 724- 1	9,926.9	
”	어린이 공원	효자동1가 659- 4	3,143.5	

⑦ 상 · 하 수 도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²)	비 고
상·하수도	상·하수도	“해 당 없 음”	-	

⑧ 전기공급시설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²)	비 고
전기공급 시 설	전기공급시설	“해 당 없 음”	-	

⑨ 가스공급설비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²)	비 고
가스공급 설 비	가스공급설비	“해 당 없 음”	-	

3 街區 및 劃地 計劃

- 본 계획에서는 건축법 및 전주시 건축조례에 의거 최소 대지면적 이상으로 획지 계획

단위: m²

구 분	건 축 법	전주시건축조례	적 용	비 고
일반주거지역	60 이상	90 이상	240	평균면적

※ 건축법 제49조 및 령 제80조의 규정, 전주시 건축조례 제74조 의거
가. 단독주택시설 용지

구 분	획 지		면 적		비 고
	획지수(획지)	구성비(%)	면 적(m ²)	구성비(%)	
합 계	62	100.0	13,543.9	100.0	
65평 이상	17	27.4	3,574.8	26.4	
65~70평 미만	45	72.6	9,969.1	73.6	
70평 이상	-	-	-	-	

나. 근린 생활시설 용지

구 분	획 지		면 적		비 고
	획지수(획지)	구성비(%)	면 적(m ²)	구성비(%)	
합 계	28	100.0	9,233.5	100.0	
80평 이상	-	-	-	-	
80~85평 미만	14	50.0	3,771.7	40.8	
85~90평 미만	13	46.4	3,750.8	40.6	
90평 이상	1	3.6	1,711.0	18.6	

⑩ 공 동 구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공 동 구	공 동 구	“해 당 없 음”	-	

⑪ 열공급설비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열 공 급 설 비	열 공급설비	“해 당 없 음”	-	

⑫ 방송·통신시설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방 송 · 통 신 시 설	방 송 · 통 신 시 설	“해 당 없 음”	-	

⑬ 공용의 청사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공 용 의 청 사	소 방 서	효자동1가 670	3,103.8	

⑭ 학 교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학 교	초 등 학 교	효자동1가 659- 2	10,026.8	

⑮ 종교시설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비 고
종교시설	교 회	삼천동1가 284-17	1,345.9	

4 建築物 用途 및 建蔽率·容積率·높이計劃

1. 건축물의 용도계획

가. 단독주택 : 단독주택 및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 시설중
관련법규 및 조례에 의거한 금지시설을 제외한 시설
(건축물의 연면적중 60%이상을 주거용주택으로 건축하고,
나머지는 근린생활 시설 건축을 허용)

나. 근린생활시설 :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 시설중 관련법규
및 조례에 의거한 금지시설을 제외한 시설

2. 건축물의 건폐율·용적율·높이계획.

구 분		면 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율 (%)	층수	사업 유형	평형	비고
주택건설 용지								
단독주택 용 지	7BL	2,730.5	60이하	400이하	4층이하			12필지
	8BL	2,630.7	"	"	"			12필지
	9BL	2,515.7	"	"	"			12필지
	11BL	2,622.2	"	"	"			12필지
	12BL	3,044.8	"	"	"			14필지
공동주택 용 지	2BL (호자1가660-1)	15,842.1	25.0	250.0	18층이하	임대 분양	60㎡이하	1필지
	3BL (삼천1가722-2)	18,579.0	25.0	250.0	"	일반 분양	60~85㎡ 이하	1필지
	6BL (삼천1가723-2)	31,728.0	25.0	250.0	"	"	"	1필지
근린생활 용 지	4BL (호자1가662-3)	1,711.0	60이하	400이하	5층이하			1필지
	10BL	3,771.7	"	"	"			14필지
	13BL	3,750.8	"	"	"			13필지
공공시설 용지								
학교용지	1BL (호자1가659-2)	10,026.8	60이하	400이하	5층이하	-	-	초등학교
공용의 청사	14BL (호자1가670)	3,103.8	"	"	"	-	-	소방서
종교시설 용지								
종교시설 용 지	5-1BL (삼천1가284-17)	1,345.9	60이하	400이하	5층이하			교회

※기타용지 및 시설의 건폐율,용적율은 전주시건축조례 및 관계법규에 의함.

1) 단독주택 용지

○ 용도계획

- 단독주택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겸용 단독주택으로 한다.
- 근린생활시설 겸용 단독주택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연면적중 60%이상은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하고 그외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한다.
- 건폐율 : 건축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규정과 전주시 건축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60%이하로 한다.
- 용적율 :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규정과 전주시 건축조례 제71조 규정을 감안하여 400% 이하로 한다.
- 높이계획 :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상 4층 이하로 한다.

도면표시	지정용도	불허용도
A	· 단독주택 · 다가구주택 · 근린생활시설겸용 단독주택	·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· 근린생활시설중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
2) 공동주택 용지

○ 용도계획

- 공동주택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지정된 용도로 건축하여야 한다.

- 부대·복리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6호, 제7호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.

- 건폐율 : 건축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규정과 전주시 건축 조례 제68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고 개방감을 부여 하도록 25% 이하로 한다.
- 용적율 : 가구별 주택 유형별로 정해진 용적율 250%이하로 한다.
- 높이계획 :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상18층 이하로 한다.

도면표시	지 정 용 도	불 허 용 도
B	·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·복리 시설	·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C	·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 하는 아파트 및 부대·복리 시설.	·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
3) 근린생활 용지

- 근린생활 시설 용지에 건축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지정된 용도로 건축 하여야 한다.
- 건폐율 : 건축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규정과 전주시 건축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60%이하로 한다.
- 용적율 :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규정과 전주시 건축 조례 제71조 규정을 감안하여 400% 이하로 한다.

- 높이계획 :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상 5층 이하로 한다.

도면표시	지정용도	불허용도
D	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	•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• 안마시술소
E	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	•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• 안마시술소 •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 불허용도

4) 공공시설 용지

- 공공 건축물로 건축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지정된 용도로 건축 하여야 한다.
- 건폐율 : 건축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규정과 전주시 건축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60%이하로 한다.
- 용적율 :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규정과 전주시 건축 조례 제71조 규정을 감안하여 400% 이하로 한다.
- 높이계획 :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상 5층 이하로 한다.

도면표시	지정용도	불허용도
F	• 소방서 및 그 부속용도	•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G	• 초등학교 및 그 부속용도	•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
3.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

1) 단독주택 용지

- 건축물의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. 단, 도로에 면한 외벽은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.

2) 공동주택 용지

- 공동주택용지에 건축하는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관을 고려한 형태로 한다.
- 아파트는 지정된 건축선 범위내에서 건축 하여야 한다.

3) 근린생활 용지

- 건축물의 외벽은 동일한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. 단, 도로에 면한 외벽은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.

4) 공공시설 용지

- 공공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정된 건축선 범위내에서 건축 하여야 한다.

4. 기타에 관한 계획

가. 도시경관 조성계획

- 단지내 주동선을 기준으로 주동이 각각 배치 되도록 계획 하여 내부동선변에 공간감 확보 및 OPEN SPACE 연계체제로 다양한 주동경관 형성
- 어린이공원 (3,143.5㎡) 및 근린공원 (9,926.9㎡)은 입주민의 이용 거리를 감안 분산설치하여 휴식공간 및 생활편익 시설 도로

나. 교통처리 계획

○ 진·출입 동선

- 본 사업지 진·출입은 택지내의 도시계획도로(중로1-22, 소로1-143, 소로1-245, 소로1-247, 소로1-249, 소로1-243)와 기존 도로망을 연결 하여 진·출입시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도모

○ 보행동선 및 교통안전

-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공원의 정적 공간을 설정하여 보행안전 도모
- 본 사업지의 남북 및 동서로 관통하는 중로1-2, 중로1-22에 보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 및 안전도모

○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계획

- 지구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, 지구간 주간선도로 및 지구 주진입도로로 이용 하도록 계획
- 단독택지 및 공동주택지내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소방활동을 위해 폭 6~8m의 소로를 개설토록 계획

다. 기 타

- 지역 주민의 안전도모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중로1-2, 중로1-22, 소로1-249에 가로등 및 가로시설물을 설치토록 하였으며, 중로 1-22에는 가로수를 식재토록 계획
- 공동주택용지 및 초등학교 용지의 남북측에는 폭5m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토록 계획

5 其他 事項에 關한 計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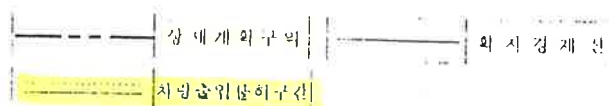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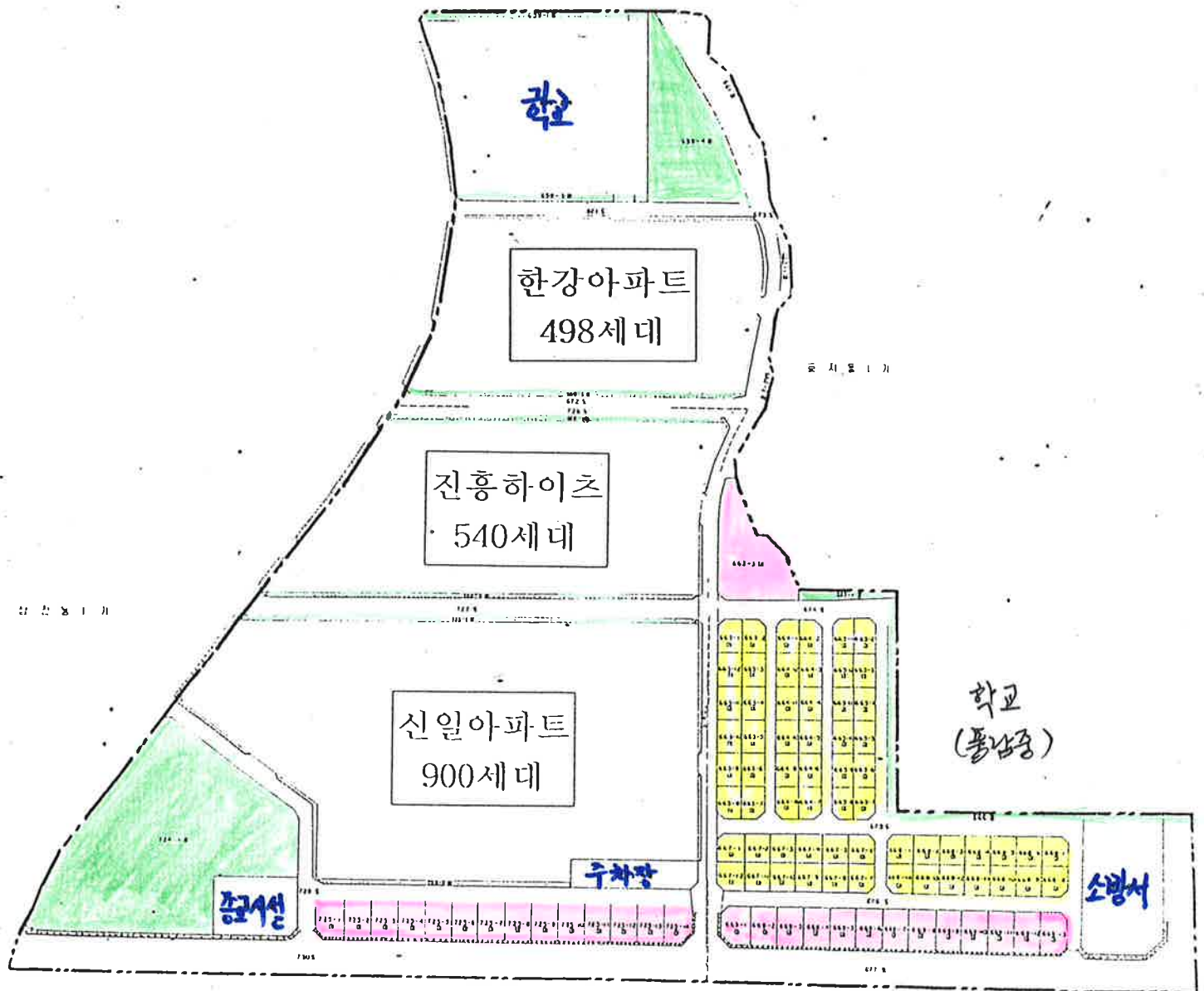
1. 도시경관 조성계획

- 단지내 주동선을 기준으로 주동이 각각 배치되도록 계획하여 내부 동선변에 공간감 확보 및 OPEN SPACE 연계체계로 다양한 주동 경관 형성
- 어린이공원(3,143.5m²) 및 근린공원(9,926.9m²)은 입주민의 이용거리를 감안 분산설치 하여 휴식공간 및 생활편익 시설 도모

2. 교통처리 계획

- 진·출입 동선
 - 본사업지 진·출입은 택지내의 도시계획도로(중로1-22, 소로1-143, 소로1-245, 소로1-247, 소로1-249, 소로1-243)와 기존도로망을 연결하여 진·출입시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도모
 - 보행동선 및 교통안전
 -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공원의 정적 공간을 설정하여 보행안전 도모
 - 본 사업지의 남북 및 동서로 관통하는 중로 1-2, 중로1-22에 보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 및 안전도모
 - 교통치리를 위한 도로계획
 - 지구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, 지구간 주간선도로 및 지구 주진입도로로 이용 하도록 계획
 - 단독택지 및 공동주택지내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소방활동을 위해 폭 6~8m의 소로를 개설토록 계획
- ### 3. 기 타
- 지역주민의 안전도모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중로1-2, 중로1-22, 소로1-249에 가로등 및 가로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였으며, 중로 1-22에는 가로수를 식재토록 계획
 - 공동주택용지 및 초등학교 용지의 남북측에는 폭5m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토록 계획

획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도



- 단독주택 단지
- 근린생활시설용지
- 공원

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도



교통처리계획도

